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자치행정과)

의안번호	제 106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03. 13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3.1.1.)에 따라, 성북구 답례품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목적 (안 제1조)
- 나.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 ~ 제11조)
- 다. 고향사랑기금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 ~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3. 1. 12. ~ 2023. 2. 22.(41일간),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-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 18489호, 2021.10.19. 공포, 2023.1.1. 시행)¹⁾이 제정 되었음.

1) 고향사랑 기부금

- 1. 개요 :**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,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,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(세액공제)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.
 -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,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.
 -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(고향사랑기금)으로 관리하며, 주민복지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음.
- 2. 기부 방법 :**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.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 후 기부하기를 실행하면 '전자납부번호'가 생성되며, 위택스의 지방세 조회/납부 화면으로 이동되어 납부할 수 있음.
- 3. 기부의 제한 :** 주민등록등본 상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.
 -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서울시 성북구 거주하는 경우 '서울시 본청'과 '성북구'에는 기부할 수 없음. 단 서울시 내 다른 구에는 기부할 수 있음.
 - 고용, 업무, 계약, 처분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여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음.
 -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할 수 없음.
 -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, 법인은 불가.
 - 연간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 원.
- 4.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**
 -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00%, 초과분은 16.5%의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.
 -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.
 -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되고, 답례품몰에서 포인트 이내의 답례품을 주문할 수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(법 제9조제2항)²⁾,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(법 제11조제3항)³⁾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2) 제9조(답례품의 제공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(이하 “답례품”이라 한다)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·제조된 물품
2.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
3.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

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현금
2.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
3.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
4.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3)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모집·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,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2조에서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,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,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북구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